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 지역의 불공정행위 사건과 민원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소속으로 경인지방공정거래사무소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50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 6급 22명, 7급 15명, 8급 4명, 9급 4명)을 증원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디지털 홍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며, 불공정 행위 사건 조사 및 민원처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증원하는 인력 45명(6급 22명, 7급 15명, 8급 4명, 9급 4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00. 0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융·복합형 인재 활용 및 효율적인 조직·인력 운영을 위하여 직급별 정원의 직렬을 조정하고, 신고포상금제도 운용의 업무 분장을 시장감시 정책과에서 조사총괄담당관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생략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12. 00. ~ 12.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제3항제3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1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신고포상금제도 운용

제9조제6항제7호를 삭제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경인지방공정거래사무소) ① 경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경인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총괄과·가맹유통소비자과·건설하도급과 및 제조하도급과를 두되, 총괄과장은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가맹유통소비자과장·건설하도급과장 및 제조하도급과장은 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문서관리·인사관리 및 사정 업무
2. 예산 운용과 물품 관리
3. 법령질의·민원에 대한 회신과 상담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제도에 대한 교육·홍보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 남용행위·불공정거래행위·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6. 그 밖에 사무소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가맹유통소비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3.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4.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시정조치·영업정지·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6.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시정조치·영업정지·등록취소·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7.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시정조치·영업정지·등록취소·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8. 관할 지역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교육 및 홍보

⑤ 건설하도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설업·전기공사업·전기통신공사업 및 소방시설공사업, 그 밖의 건설 관련 업종에 대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2. 건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교육·홍보

⑥ 제조하도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조·용역 및 수리 위탁 분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2. 제조·용역 및 수리 위탁 분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교육·홍보

제17조제4항 중 “공공데이터”를 “디지털 홍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공공데이터”로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위원회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1, 별표 2, 별표 2의2, 별표 3, 별표 3의2 및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2, 제19조, 별표 1, 별

표 3, 별표 3의2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지방공정거래사무소의 관할구역(제16조 관련)

명 칭	관 할 구 역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서울특별시 · 강원특별자치도
경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인천광역시 · 경기도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부산광역시 · 울산광역시 · 경상남도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광주광역시 · 전북특별자치도 · 전라남도 · 제주특별자치도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대전광역시 · 세종특별자치시 · 충청북도 · 충청남도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대구광역시 · 경상북도

[별표 2]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1항 본문 관련)

총계	484
정무직 계	2
위원장(장관급)	1
부위원장(차관급)	1
별정직 계	1
비서(6급 상당)	1
일반직 계	481
고위공무원단	1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3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2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31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시설사무관·사서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43
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시설사무관·사서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175
행정주사·전산주사·시설주사·사서주사·운전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130
행정주사보·전산주사보·시설주사보·사서주사보 또는 운전주사보	43
행정서기·전산서기·시설서기·사서서기 또는 운전서기	17

행정서기보 · 전산서기보 · 시설서기보 · 사서서기보 · 운전서기 보 또는 사무운영서기보	10
전문경력관 가군(비상계획 담당)	1
전문경력관 나군(사진 및 영상 촬영 · 편집 담당)	1
전문경력관 다군(속기 담당)	1
전문경력관 라군(속기 담당)	2

[별표 2의2]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1항 단서 관련)

총계	484
정무직 계	2
위원장(장관급)	1
부위원장(차관급)	1
별정직 계	1
비서(6급 상당)	1
일반직 계	481
고위공무원단	1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3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2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31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시설사무관·사서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43
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시설사무관·사서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182
행정주사·전산주사·시설주사·사서주사·운전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123
행정주사보·전산주사보·시설주사보·사서주사보 또는 운전주사보	43
행정서기·전산서기·시설서기·사서서기 또는 운전서기	16

행정서기보 · 전산서기보 · 시설서기보 · 사서서기보 · 운전서기 보 또는 사무운영서기보	11
전문경력관 가군(비상계획 담당)	1
전문경력관 나군(사진 및 영상 촬영 · 편집 담당)	1
전문경력관 다군(속기 담당)	1
전문경력관 라군(속기 담당)	2

[별표 3]

지방공정거래사무소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2항 본문 관련)

총 계	214
일반직 계	214
고위공무원단	1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5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시설사무관·사서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6
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시설사무관·사서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42
행정주사·전산주사·시설주사·사서주사·운전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76
행정주사보·전산주사보·시설주사보·사서주사보 또는 운전주사보	56
행정서기·전산서기·시설서기·사서서기 또는 운전서기	14
행정서기보·전산서기보·시설서기보·사서서기보·운전서기보 또는 사무운영서기보	13

[별표 3의2]

지방공정거래사무소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2항 단서 관련)

총계	214
일반직 계	214
고위공무원단	1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5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시설사무관·사서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6
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시설사무관·사서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43
행정주사·전산주사·시설주사·사서주사·운전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75
행정주사보·전산주사보·시설주사보·사서주사보 또는 운전주사보	56
행정서기·전산서기·시설서기·사서서기 또는 운전서기	13
행정서기보·전산서기보·시설서기보·사서서기보·운전서기보 또는 사무운영서기보	14

[별표 4]

공정거래위원회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제19조 관련)

1. 공정거래위원회

가. 평가대상 조직

조직	정원	평가기간
조사관리관	1명 (고위공무원단 가급 1명)	2026년 3월 31일까지

2.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기관

가. 평가대상 정원

업무	정원	평가기간
불공정행위 사건 조사 및 민원 처리 업무	45명 (6급 22명, 7급 15명, 8급 4명, 9급 4명)	2028년 3월 1일까지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의3(조사관리관) ① ~ ② (생략) ③ 조사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조사관리관을 보좌한다. 1. ~ 2. (생략) <u><신설></u> 3. ~ 14. (생략)	제6조의3(조사관리관) ① ~ ② (생략) ③ 조사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조사관리관을 보좌한다. 1. ~ 2. (생략) 3. <u>신고포상금제도 운용</u> 4. ~ 15. (생략)
제9조(경쟁정책국) ① ~ ⑤ (생략) ⑥ 시장감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6. (생략) 7. <u>신고포상금제도 운용</u> 8. ~ 23. (생략) <u><신설></u>	제9조(경쟁정책국) ① ~ ⑤ (생략) ⑥ 시장감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6. (생략) 7. <u><삭제></u> 8. ~ 23. (생략) <u>제14조의2(경인지방공정거래사무소) ① 경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u> <u>② 경인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총괄과·가맹유통소비자과·건설하도급과 및 제조하도급과를 두되, 총괄과장은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u>

로, 가맹유통소비자과장·건설
하도급과장 및 제조하도급과장
은 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 또
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
장한다.

1. 보안·문서관리·인사관리
및 사정 업무

2. 예산 운용과 물품 관리

3. 법령질의·민원에 대한 회신
과 상담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제도
에 대한 교육·홍보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장지배
적사업자의 지위 남용행위·
불공정거래행위·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및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에 대한 조사·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6. 그 밖에 사무소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가맹유통소비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 · 시정조치 · 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
항에 대한 조사 · 시정조치 ·
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3.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
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 · 시정조치 · 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4. 「표시 · 광고의 공정화에 관
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 · 시정조치 · 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
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사
항에 대한 조사 · 시정조치 ·
영업정지 · 과징금 부과 및 이
행 확인

6.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
률」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 ·
시정조치 · 영업정지 · 등록취
소 · 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
인

7.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 · 시정

	<u>조치 · 영업정지 · 등록취소 ·</u> <u>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u>
	<u>8. 관할 지역 소비자에 대한 정</u> <u>보제공 · 교육 및 홍보</u>
	<u>⑤ 건설하도급과장은 다음 사항</u> <u>을 분장한다.</u>
	<u>1. 건설업 · 전기공사업 · 전기통</u> <u>신공사업 및 소방시설공사업,</u> <u>그 밖의 건설 관련 업종에 대</u> <u>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u> <u>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u> <u>조사 · 시정조치 · 과징금 부과</u> <u>및 이행 확인</u>
	<u>2. 건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u> <u>관한 교육 · 홍보</u>
	<u>⑥ 제조하도급과장은 다음 사항</u> <u>을 분장한다.</u>
	<u>1. 제조 · 용역 및 수리 위탁 분</u> <u>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u> <u>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u> <u>조사 · 시정조치 · 과징금 부과</u> <u>및 이행의 확인</u>
	<u>2. 제조 · 용역 및 수리 위탁 분</u> <u>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u> <u>교육 · 홍보</u>
제17조(공정거래위원회에 두는 공	제17조(공정거래위원회에 두는 공

무원의 정원) ① ~ ③ (생략) ④ 공정거래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u>공공데이터</u>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경쟁 관련 경제분석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및 정보보호·보안을 담당하는 1명(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⑤ (생략) 제19조(평가대상 <u>조직</u>) 위원회에 두는 평가대상 <u>조직</u>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4와 같다.	무원의 정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u>디지털</u> <u>홍보</u>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u>공공데이터</u> ----- ----- ----- ----- ----- -. ⑤ (현행과 같음) 제19조(평가대상 <u>조직</u> 및 정원) ----- ----- <u>조직</u> 및 <u>정원</u>----- -----.
--	---

신 · 구정원대비표

[별표 2]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483</u>	<u>484</u>	+1
·	·	·	
·	·	·	
일반직 계	<u>480</u>	<u>481</u>	+1
·	·	·	
·	·	·	
<u>부이사관 또는 서기관</u>	<u>12</u>	<u><삭 제></u>	-12
<u>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과학 기술서기관</u>	<u><신 설></u>	<u>12</u>	+12
<u>서기관</u>	<u>29</u>	<u><삭 제></u>	-29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u>1</u>	<u>31</u>	+30
<u>서기관 또는 별정직 4급 상 당(비서)</u>	<u>1</u>	<u><삭 제></u>	-1
<u>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u>	<u>42</u>	<u><삭 제></u>	-42
<u>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 무관</u>	<u>1</u>	<u><삭 제></u>	-1

<u>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전산사무관 · 시설사무관 · 사서사무 관 또는 기록연구관</u>	<u><신 설></u>	<u>43</u>	+43
<u>행정사무관</u>	<u>158</u>	<u><삭 제></u>	-158
<u>전산사무관</u>	<u>5</u>	<u><삭 제></u>	-5
<u>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u>	<u>8</u>	<u><삭 제></u>	-8
<u>시설사무관</u>	<u>1</u>	<u><삭 제></u>	-1
<u>행정사무관 · 시설사무관 · 사서사무관 또는 기록연 구관</u>	<u>2</u>	<u><삭 제></u>	-2
<u>행정사무관 · 전산사무관 · 시설사무관 · 사서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u>	<u><신 설></u>	<u>175</u>	+175
<u>행정주사</u>	<u>118</u>	<u><삭 제></u>	-118
<u>행정주사 · 시설주사 · 사서 주사 또는 기록연구사</u>	<u>4</u>	<u><삭 제></u>	-4
<u>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u>	<u>4</u>	<u><삭 제></u>	-4
<u>행정주사 또는 운전주사</u>	<u>1</u>	<u><삭 제></u>	-1
<u>전산주사</u>	<u>3</u>	<u><삭 제></u>	-3
<u>행정주사 · 전산주사 · 시설 주사 · 사서주사 · 운전주 사 또는 기록연구사</u>	<u><신 설></u>	<u>130</u>	+130

<u>행정주사보</u>	<u>34</u>	<u><삭 제></u>	-34
<u>행정주사보 · 시설주사보 또는 사서주사보</u>	<u>2</u>	<u><삭 제></u>	-2
<u>행정주사보 · 전산주사보 또는 운전주사보</u>	<u>3</u>	<u><삭 제></u>	-3
<u>전산주사보</u>	<u>4</u>	<u><삭 제></u>	-4
<u>행정주사보 · 전산주사보 · 시설주사보 · 사서주사보 또는 운전주사보</u>	<u><신 설></u>	<u>43</u>	+43
<u>행정서기 또는 사서서기</u>	<u>16</u>	<u><삭 제></u>	-16
<u>전산서기</u>	<u>1</u>	<u><삭 제></u>	-1
<u>행정서기 · 전산서기 · 시설서기 · 사서서기 또는 운전서기</u>	<u><신 설></u>	<u>17</u>	+17
<u>행정서기보</u>	<u>3</u>	<u><삭 제></u>	-3
<u>행정서기보 · 전산서기보 · 사서서기보 또는 운전서기보</u>	<u>2</u>	<u><삭 제></u>	-2
<u>운전서기보</u>	<u>1</u>	<u><삭 제></u>	-1
<u>사무운영서기보</u>	<u>4</u>	<u><삭 제></u>	-4
<u>행정서기보 · 전산서기보 · 시설서기보 · 사서서기보 · 운전서기보 또는 사무운영서기보</u>	<u><신 설></u>	<u>10</u>	+10

	.	.	.	
	.	.	.	

[별표 2의2]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483</u>	<u>484</u>	+1
•	•	•	
•	•	•	
일반직 계	<u>480</u>	<u>481</u>	+1
•	•	•	
•	•	•	
<u>부이사관 또는 서기관</u>	<u>12</u>	<u><삭 제></u>	-12
<u>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과학 기술서기관</u>	<u><신 설></u>	<u>12</u>	+12
<u>서기관</u>	<u>29</u>	<u><삭 제></u>	-29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u>1</u>	<u>31</u>	+30
<u>서기관 또는 별정직 4급 상 당(비서)</u>	<u>1</u>	<u><삭 제></u>	-1
<u>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u>	<u>42</u>	<u><삭 제></u>	-42
<u>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 무관</u>	<u>1</u>	<u><삭 제></u>	-1

<u>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전산사무관 · 시설사무관 · 사서사무 관 또는 기록연구관</u>	<u><신 설></u>	<u>43</u>	+43
<u>행정사무관</u>	<u>165</u>	<u><삭 제></u>	-165
<u>전산사무관</u>	<u>5</u>	<u><삭 제></u>	-5
<u>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u>	<u>8</u>	<u><삭 제></u>	-8
<u>시설사무관</u>	<u>1</u>	<u><삭 제></u>	-1
<u>행정사무관 · 시설사무관 · 사서사무관 또는 기록연 구관</u>	<u>2</u>	<u><삭 제></u>	-2
<u>행정사무관 · 전산사무관 · 시설사무관 · 사서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u>	<u><신 설></u>	<u>182</u>	+182
<u>행정주사</u>	<u>111</u>	<u><삭 제></u>	-111
<u>행정주사 · 시설주사 · 사서 주사 또는 기록연구사</u>	<u>4</u>	<u><삭 제></u>	-4
<u>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u>	<u>4</u>	<u><삭 제></u>	-4
<u>행정주사 또는 운전주사</u>	<u>1</u>	<u><삭 제></u>	-1
<u>전산주사</u>	<u>3</u>	<u><삭 제></u>	-3
<u>행정주사 · 전산주사 · 시설 주사 · 사서주사 · 운전주 사 또는 기록연구사</u>	<u><신 설></u>	<u>123</u>	+123

<u>행정주사보</u>	<u>34</u>	<u><삭 제></u>	-34
<u>행정주사보 · 시설주사보 또는 사서주사보</u>	<u>2</u>	<u><삭 제></u>	-2
<u>행정주사보 · 전산주사보 또는 운전주사보</u>	<u>3</u>	<u><삭 제></u>	-3
<u>전산주사보</u>	<u>4</u>	<u><삭 제></u>	-4
<u>행정주사보 · 전산주사보 · 시설주사보 · 사서주사보 또는 운전주사보</u>	<u><신 설></u>	<u>43</u>	+43
<u>행정서기 또는 사서서기</u>	<u>15</u>	<u><삭 제></u>	-15
<u>전산서기</u>	<u>1</u>	<u><삭 제></u>	-1
<u>행정서기 · 전산서기 · 시설서기 · 사서서기 또는 운전서기</u>	<u><신 설></u>	<u>16</u>	+16
<u>행정서기보</u>	<u>4</u>	<u><삭 제></u>	-4
<u>행정서기보 · 전산서기보 · 사서서기보 또는 운전서기보</u>	<u>2</u>	<u><삭 제></u>	-2
<u>운전서기보</u>	<u>1</u>	<u><삭 제></u>	-1
<u>사무운영서기보</u>	<u>4</u>	<u><삭 제></u>	-4
<u>행정서기보 · 전산서기보 · 시설서기보 · 사서서기보 · 운전서기보 또는 사무운영서기보</u>	<u><신 설></u>	<u>11</u>	+11

	.	.	.	
	.	.	.	

[별표 3]

지방공정거래사무소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2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164</u>	<u>214</u>	+50
일반직 계	<u>164</u>	<u>214</u>	+50
·	·	·	
<u>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과학 기술서기관</u>	<u><신 설></u>	<u>1</u>	+1
<u>서기관</u>	<u>5</u>	<u><삭 제></u>	-5
<u>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u>	<u><신 설></u>	<u>5</u>	+5
<u>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u>	<u>5</u>	<u><삭 제></u>	-5
<u>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 ·시설사무관·사서사무 관 또는 기록연구관</u>	<u><신 설></u>	<u>6</u>	+6
<u>행정사무관</u>	<u>37</u>	<u><삭 제></u>	-37
<u>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u>	<u>1</u>	<u><삭 제></u>	-1
<u>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u>	<u>1</u>	<u><삭 제></u>	-1
<u>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 시설사무관·사서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u>	<u><신 설></u>	<u>42</u>	+42
<u>행정주사</u>	<u>52</u>	<u><삭 제></u>	-52
<u>행정주사 또는 시설주사</u>	<u>1</u>	<u><삭 제></u>	-1

<u>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u>	<u>1</u>	<u><삭 제></u>	-1
<u>행정주사 · 전산주사 · 시설 주사 · 사서주사 · 운전주 사 또는 기록연구사</u>	<u><신 설></u>	<u>76</u>	+76
<u>행정주사보</u>	<u>40</u>	<u><삭 제></u>	-40
<u>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u>	<u>1</u>	<u><삭 제></u>	-1
<u>행정주사보 · 전산주사보 · 시설주사보 · 사서주사보 또는 운전주사보</u>	<u><신 설></u>	<u>56</u>	+56
<u>행정서기</u>	<u>10</u>	<u><삭 제></u>	-10
<u>행정서기 · 전산서기 · 시설 서기 · 사서서기 또는 운전 서기</u>	<u><신 설></u>	<u>14</u>	+14
<u>행정서기보</u>	<u>5</u>	<u><삭 제></u>	-5
<u>운전서기보</u>	<u>1</u>	<u><삭 제></u>	-1
<u>사무운영서기보</u>	<u>3</u>	<u><삭 제></u>	-3
<u>행정서기보 · 전산서기보 · 시설서기보 · 사서서기보 · 운전서기보 또는 사무운 영서기보</u>	<u><신 설></u>	<u>13</u>	+13

[별표 3의2]

지방공정거래사무소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2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164</u>	<u>214</u>	+50
일반직 계	<u>164</u>	<u>214</u>	+50
·	·	·	
<u>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과학 기술서기관</u>	<u><신 설></u>	<u>1</u>	+1
<u>서기관</u>	<u>5</u>	<u><삭 제></u>	-5
<u>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u>	<u><신 설></u>	<u>5</u>	+5
<u>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u>	<u>5</u>	<u><삭 제></u>	-5
<u>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 ·시설사무관·사서사무 관 또는 기록연구관</u>	<u><신 설></u>	<u>6</u>	+6
<u>행정사무관</u>	<u>38</u>	<u><삭 제></u>	-38
<u>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u>	<u>1</u>	<u><삭 제></u>	-1
<u>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u>	<u>1</u>	<u><삭 제></u>	-1
<u>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 시설사무관·사서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u>	<u><신 설></u>	<u>43</u>	+43
<u>행정주사</u>	<u>51</u>	<u><삭 제></u>	-51
<u>행정주사 또는 시설주사</u>	<u>1</u>	<u><삭 제></u>	-1

<u>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u>	<u>1</u>	<u><삭 제></u>	-1
<u>행정주사 · 전산주사 · 시설 주사 · 사서주사 · 운전주 사 또는 기록연구사</u>	<u><신 설></u>	<u>75</u>	+75
<u>행정주사보</u>	<u>40</u>	<u><삭 제></u>	-40
<u>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u>	<u>1</u>	<u><삭 제></u>	-1
<u>행정주사보 · 전산주사보 · 시설주사보 · 사서주사보 또는 운전주사보</u>	<u><신 설></u>	<u>56</u>	+56
<u>행정서기</u>	<u>9</u>	<u><삭 제></u>	-9
<u>행정서기 · 전산서기 · 시설 서기 · 사서서기 또는 운전 서기</u>	<u><신 설></u>	<u>13</u>	+13
<u>행정서기보</u>	<u>6</u>	<u><삭 제></u>	-6
<u>운전서기보</u>	<u>1</u>	<u><삭 제></u>	-1
<u>사무운영서기보</u>	<u>3</u>	<u><삭 제></u>	-3
<u>행정서기보 · 전산서기보 · 시설서기보 · 사서서기보 · 운전서기보 또는 사무운 영서기보</u>	<u><신 설></u>	<u>14</u>	+14